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 대책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8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14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5. 9. 2)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김 중 하

가.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장 교통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도” 1개 차로이상 점용하거나, “특별시도” 1개 차로이상을 30일 이하로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보 및 제3조)
- 교통소통대책으로는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의 공사 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 도로 안내표지설치, 공사시행예고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전문회사)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두고, 자문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정함(안 제5조 및 제9조)
-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 하도록 함(안 제6조)
-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에 의거 도로공사장 교통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보행자의 안전 및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동 조례안은 본칙 12조 부칙 2조로 조문이 배열되었으며,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공사는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대상공사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시기와 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이 안 제6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교통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자문회의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사 관련부서 담당주사 및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 수시 점검과 확인이 병행되어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 답변요지(김중하 교통행정과장) : 서울시 지침으로 처리하였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답변요지(김중하 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도로법시행령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장 교통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도” 1개 차로이상 점용하거나, “특별시도” 1개 차로 이상을 30일 이하로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교통소통대책에는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 공사시행예고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
- 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전문회사)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한다)를 두고, 자문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9조)
- 마.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10조 및 11조)
- 바.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별표1 제4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05. 5. 25 ~ 6. 14)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시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제17조2의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 교통안내요원이 필요한 경우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시간의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회의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의한 공사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사관련부서 담당주사 및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준용한다.